

의안번호	제23호
의결연월일	2018. 3. 13.

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8년 3월 6일 논산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18년 3월 6일
- 다. 상정일자 : 2018년 3월 13일,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2. 제안 설명요지 (제안 설명자 : 안전총괄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규정」 등 재난 관계법령의 제·개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·조정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재난의 대응·복구 등에 관한 사항 총괄·조정 등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을 규정함(안 제2조)
-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차장,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두며, 관계 공무원으로 실무반을 편성하는 등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
-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'상황판단회의'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)
- 실무반 근무자 파견 요청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~제12조)

- 재난복구계획, 재난예방대책 등을 심의·확정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구성, 소집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3조~제15조)
- 재난현장의 총괄·지휘 및 조정과 재난상황의 통보, 재난 예보·경보의 실시, 재난수습 홍보 등 재난상황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6조~제22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략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